친환경축산물 인증

2017

사단법인 친환경축산협회

Contents

기관소개

(사)친환경축산협회 소개

- 설립목적 및 기능
- 조직도
- 일반현황
- 주요사업

친환경 인증 안내

인증신청 법규 및 인증 신청 방법 안내

- 친환경 축산의 개념
- 친환경 인증 법규
- 친환경 인증 신청서 작성 요령

친환경 인증 절차

주요사업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대상 교육
- 친환경 축산물 인증심사
- 친환경축산물 인증 사후관리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사후관리 교육 (사양관리 및 질병관리)

사후관리

친환경인증의 사후관리방법

- 인증장애요소 해소 핵심 관리포인트
- 인증 장애요소 해소 사례

기관 소개

1 사단법인 친환경축산협회 소개

1. 기관 소개

설립목적 및 기본방향

설립목적

아름답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등 **친환경축산**을 통해 우리의 축산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방향

- 친환경축산 교육 · 홍보
- 친환경축산 정책개발 및 정부건의
- 친환경축산 발전에 관한 연구
- 친환경축산물 인증 등

1. 기관 소개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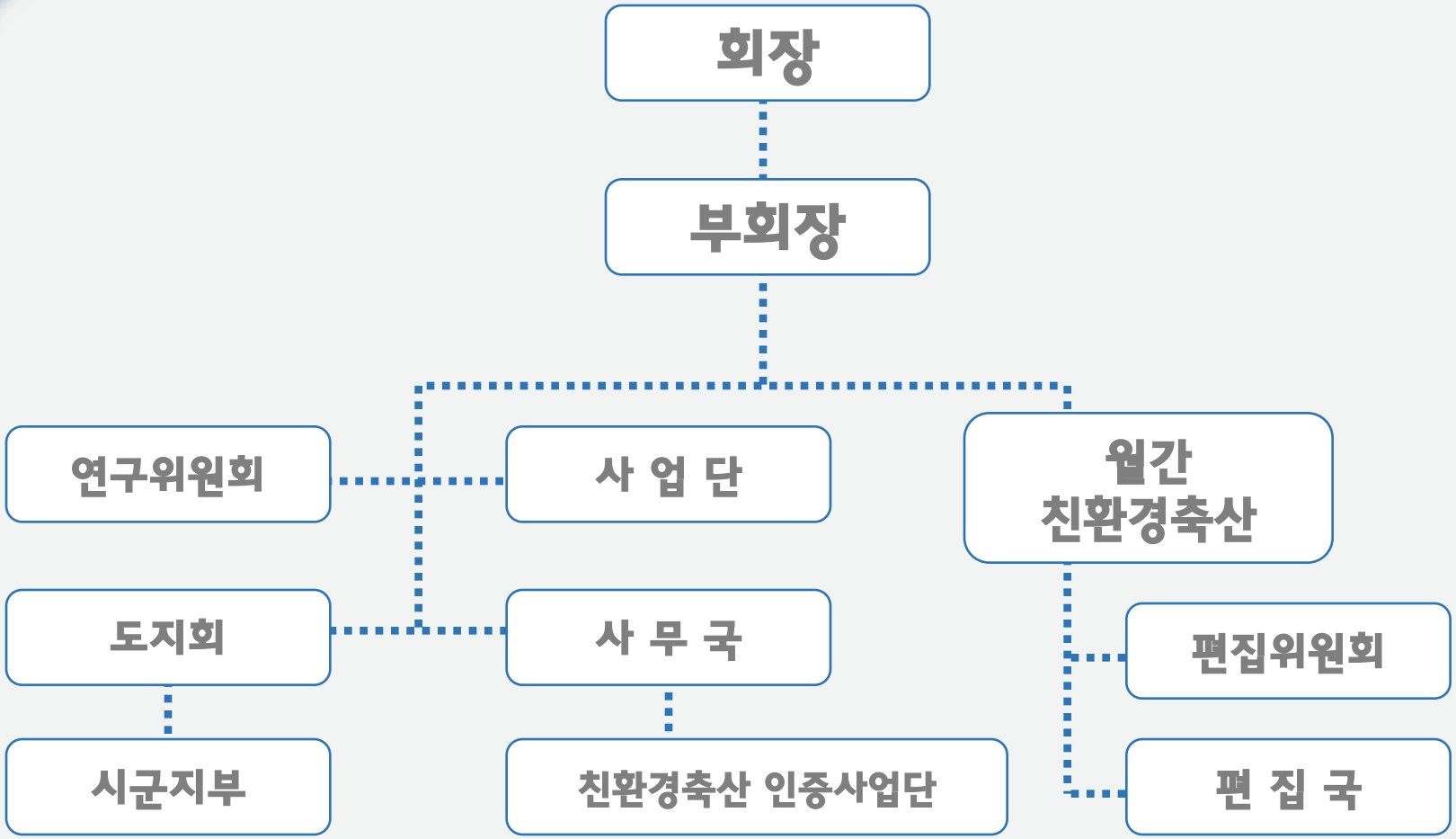

1. 기관 소개

주요사업

- 친환경축산 경영인 양성 및 관리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건의
- 아름답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컨설팅 사업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관리사업
- HACCP 인증농가 육성 및 관리사업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연구지도
- 아름다운 경관조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친환경축산을 위한 국제교류사업
- 유관단체, 사회단체, 기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
- 친환경축산 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1. 기관 소개

주요사업

- 친환경축산 기술정보, 우수사례 전파 및 홍보책자 발간 및 보급
- 자연순환농업 이행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실천 활동
- 친환경축산 실천을 위한 정부위탁사업
- 친환경축산 경영 검증 및 관리 시스템 운영
- 친환경축산 관련제품 품질 조사·연구·건의
- 친환경축산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사업
- 친환경축산 경영인 권익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안
-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된 용역사업

1. 기관 소개

일반현황

- **기관명** : 사단법인 친환경축산협회
- **설립허가연도** : 2008년 4월 23일
- **법인등록번호** : 284421-0001690
- **사업자등록번호** : 127-82-17175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35 한동빌딩 3층
- **대표전화** : 02-401-6888
- **팩스번호** : 02-409-6888
- **E-mail** : ecolives@naver.com
- **인력현황** : 9명(상근심사원 5명, 사무 및 행정요원 4명 등)
  ※ 비상근심사원 2명

2 친환경 인증 안내

1. 친환경 농축산업의 개념

친환경 농축산업의 육성 목적

- 농축산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 및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축
- 친환경농축산업 실천 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추구
-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되는 친환경농축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친환경 농산물 등 인증제도의 도입 배경

- 농야과 화학비료에 의존한 결과 토양, 수질, 대기환경 악화, 천적 감소로 인한 생태계 교란등 문제 야기
- 유기농 국제기준(Codex) 제정과 농업, 환경, 무역에 대한 논의 강화 인한 국내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제고 필요성 대두
-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3. 친환경 인증 법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가. 경영관리

- 경영관리 자료의 기록,보관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인증경력이 없는 신규 신청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 시부터 기록 할 수 있다.

나. 축사 및 사육조건

1)축사조건

가)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수 있어야 한다.

(1)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

(2)공기순환, 온습도, 먼지 및 가스 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 환기 시설을 갖출 것

나) 축사의 밀도는 축산법에 따라 적정 사축사육기준을 정한다

3. 친환경 인증 법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비고

1. 번식우: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소(큰암소)
2. 비육우: 고기소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소
3. 방사식: 축사 내 우방에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4. 계류식: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마리 = 육성우 2마리)

(2) 송아지는 번식우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는 마릿수에서 제외함)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송아지	육성우	성우
성장단계	6개월령 미만	6개월령 이상 14개월령 미만	14개월령 이상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다) 축사 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질병 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라)축사의 바닥과 깔짚은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 해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는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같은 축사에서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여서는 안된다.
4)무항생제 가축 일반 가축의 병행 생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가) 서로 독림된 축사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 하도록 표지판 설치
나) 입식시기가 경과한 일반가축은을 무항생제 가축 축사로 입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사육가축, 사료취급, 약품 투여 등은 일반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을 관리 보관 하여야 된다.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법
1) 교배는 종축을 사요한 자연교배 권장
2)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법 허용 할 수 있다. 다만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 하려는 경우 해당 농장이 인증을 받은 농장 이거나, 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이유직후 또는 부화 직후
나) 번식용 수컷
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3. 친환경 인증 법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라. 전환기간

1) 일반 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무항생제가축이 아닌 가축을 무항생제 농장에 입식하려는 경우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기준에 따라 사육 하여야 한다.

-한우의 경우 입식 후 출할 시 까지(최소 12개월).

2)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사료 및 영양 관리

1)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 후 급여하여야 한다.

2)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3) 가축에게 합성착색제를 급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생활용수 기준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줄 수 있어야 한다.

3. 친환경 인증 법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 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아니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 처방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처방전을 농장 내에 비치 하여야 한다.

4)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외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입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합성 농약 성분이 함유된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사. 운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3. 친환경 인증 법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아.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속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가축의 운동장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을 구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친환경 인증 신청서 작성 요령

신청시 필요 구비 서류 목록

인증서 작성 방법

3 친환경인증 절차

3. 주요사업내용

세부 추진계획1

축종별 인증 실무교육

- **추진시기**
  대상 농가 및 단체 선정 후
- **세부 사업내용**
  - 지역별 소단위 위주 교육 실시
  - 장소 : 추후 결정
  - 교육 내용 : 축종별 인증기준 및 신청서식 작성요령
  - 강사 : 본 협회 인증심사원

신청서류 접수

- **추진시기**
  인증실무 교육 후
- **세부 사업내용**
  - 완료된 신청 서류 접수
  - 신청 완료된 서류검토 및 보완사항 통보
  - 신청완료 순위별 현장 심사일자 통보

3. 주요사업내용

세부 추진계획2

현장심사 실시

- **추진시기**

서류검토 완료 후

- **세부사업내용**

- 신청순위에 따른 현장심사 실시 및 심사보고서 작성

심의회 개최

- **추진시기**

매월 2~4회 심의 개최

사후관리 실시

- **추진시기**

인증서 발급 후 연중 1회 이상

- **세부사업내용**

- 인증을 받은 전 농가 사후관리 실시

3. 주요사업내용

단체신청 심사방법

- 표본조사 및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 시 **전수 조사**를 실시
- **선정기준표**에 따라 표본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

구성원 수(호)	5~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이상
표본 농가	4이상	8이상	10이상	12이상	14이상	16이상	18이상	20이상	20%이상

- 그러나 전체 농가에 대한 품목 일치 여부, 제초제 사용 여부는 **반드시 확인**
- 표본농가는 **무작위로 추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심사과정에서 잠재적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농가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 심사결과 보고서는 심사한 **농가별**로 작성하고, **전체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 구성원 별로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표본심사중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에 대한 부적합**으로 판정하지만, 전체 재배지를 확인한 결과 **표본대상 외의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4 사후관리방법

4. 사후관리방법

친환경인증의 사후관리방법

생산과정 주기 조사

- 인증농가별로 연 **1회 이상 농장소재지를 방문**하여 실시
- 조사시기는 **인증 후 4개월**이 경과하면 실시
- 조사자는 **인증기관의 심사원**이 실시
- 경영관련자료를 기반으로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 위반사항 적발시 법적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4. 사후관리방법

친환경인증의 사후관리방법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제20조 제3항 관련)〉

1. 공통기준

-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기록하여야 하는 중요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
- 경영관련자료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
- 경영관련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인증품이 아닌 축산물을 인증품에 혼합하거나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혼합하는 경우

4. 사후관리방법

친환경인증의 사후관리방법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제20조 제3항 관련)〉

2. 무항생제축산물

-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은 경우**
-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상 검출**된 경우

4. 사후관리방법

인증장애요소 해소 핵심 관리포인트

인증 기준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농가의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신청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송아지 구입은 이유직후 (한우 6개월 이내)의 기준에서 시장거래 연령을 6~8개월로 확대

영농일지 미비농가는 본회에서 제작한 영농일지 및 퇴비대장을 교부, 교육을 통해 스스로 보완 작성토록 하여 인증 실시

축사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외부에서 가임 암소를 입식할 때 병행 사육으로 인증

병행생산 관련 교육을 통해 가축 입식 및 출하 기준 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건축물 대장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이 구비된 농가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사육 면적에 의한 인증 실시

식육에 대한 검사는 가축위생시험소 또는 도축장 검사, 잔류물질 성적 검사 제출시 생략 및 대체

구충제를 사용에 대하여 사료 첨가 외 다른 방법 (음수첨가, 개별주사 등)으로 사용 하도록 교육 실시

Contact

사단법인
친환경축산협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35 한동빌딩 3층
T. 02-401-6888 / F.02-409-6888

www.ecolives.co.kr

ecolives@naver.com

www.facebook.com
/ecolives